

2024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2024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구분	연락처
시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자	시군 홈페이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 담당자 확인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31-271-9224~9228, 031-268-9221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단축번호 4번] · 예탁금, 본인부담금, 카드발급, 단말기, 전자바우처시스템, 바우처결제관련 등
단말기 신청 및 개통	유비벨록스(LG개통센터) : 1899-0656 LG A/S 센터 : 1577-8911 SK A/S 센터 : 1599-3813
전자바우처클린센터	02-6360-6799 · 바우처 부정 사용 신고
4대보험 문의	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0
	고용산재보험 1588-0075

# 2024년부터 경기도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가 이렇게 **변경됩니다!!**

하나!

## 시도서비스로 전환

서비스 고도화 및 바우처 결제의 편의성을 위해 서비스 코드를 통합하여 시도서비스로 변경되었어요!!

	기 존	변 경
서비스제공범위	시·군 공동서비스	시·도 서비스
서비스코드	010109, 010409	010109, 010409(삭제)

둘!

## 소득기준 폐지

서비스 고도화 추진에 따라 소득기준이 폐지 되었어요!!

	기 존	변 경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없음

셋!

## 욕구, 우선순위 기준 재정비

더 필요한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욕구, 우선순위 기준을 재정비 하였어요!!!

자세한 내용은 chapter1. 기준정보 참고

넷!

## 제공인력 자격관리 제도 도입

제공인력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자격기준이 변경되고, 자격관리제도가 도입되었어요!

- ▶ 2024년 신규 제공인력은 국가자격과 학위전공자만 신규등록 가능합니다.(민간자격 미인정)
- ▶ 2023년까지 등록된 제공인력 중 “민간자격증”만 소지한 기존 제공인력은 유예기간 (2024.01.01.~2024.12.31.)내 필수전공과목 이수를 통해 추가 자격인정이 필요합니다. (조건부 참여)
- ▶ 2024년부터 시군에 신규 제공인력 등록시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가입을 통해 사전 자격 적합성을 검토받아야합니다.

다섯!

## 가격탄력제 도입!

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가격탄력제가 도입되었어요!

서비스 가격 : 월 18~25만원 (가격탄력제,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구 분	정부지원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62,000원 (90%)	18,000~88,000원
2등급(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144,000원 (80%)	36,000~106,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126,000원 (70%)	54,000~124,000원
4등급(기준중위소득 140%초과~160%이하)	90,000원 (50%)	90,000~160,000원
5등급(기준중위소득 160%초과)	36,000원 (20%)	144,000~214,000원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기준정보

적용시점 : 2024.01.01.  
적용대상 : 적용시점 이후 신규(재판정) 이용자

**1. 목적**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2. 이용대상** 소득, 연령, 욕구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 : 만 18세 이하

**소득기준** : 없음

**욕구기준** :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욕구판단은 <①, ②, ③, ④, ⑤, ⑥>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

구분	제출 서류
①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추천공문 또는 추천서
②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3개월 이상 약물치료관련 의료기록, 의사 소견서 등
③ 각 지역 병원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우선순위는 진단서만 인정
④ 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	추천서
⑤ Wee센터(Wee클래스)	추천서
⑥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급), 언어재활사(1급)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언어재활사는 언어평가 관련 검사도구 사용

## ▶ 임상심리평가 검사도구 안내

-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고,
-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IV, K-WISC-V 지능검사,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함.
-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언어평가도구는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SELSI, K M-B CDI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고 (부모보고 검사 시 객관적 판단을 위해 관찰평가 포함), 전문가보고 검사도구 PRES, LSSC, REVT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 실시함.

- 우선순위** : ①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 ②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 ③ 의사 진단서 제출자
  - ④ 법정한부모(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의 아동, 가정위탁아동
  - 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학교장 또는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의 추천자
  - ⑥ Wee센터(Wee클래스) 추천자
  - ⑦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 ⑧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중복제한**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및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3. 지원기간, 서비스 시간 및 횟수

지원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최대 24개월)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㉓ 개별(1:1) : 주 1회(월 4회) / 회당 60분(10분 이내 준비 및 기록포함)

- ㉔ 집단(1:2~3) : 주 1회(월 4회)  
 집단(1:2) 서비스 시간 : 회당 70분  
 집단(1:3) 서비스 시간 : 회당 90분

※ 집단서비스의 경우 1:1 서비스 보다 효과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소견서, 보호자 동의서를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집단(1:2~1:3) 허용

### 4. 서비스 내용

연 번	서비스 내용	비고
기본 서비스	㉓ 심리검사 :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해 자기이해를 돕고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들을 파악하여 가장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	
	㉔ 서비스내용	
	놀이 프로그램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발달 등 지원
	언어 프로그램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 / 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 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인지 프로그램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미술 프로그램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음악 프로그램	음악을 도구로 사용하여 아동의 정서 심리적 지원을 하며 문제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향상
부가 서비스	㉓ 부모상담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면담) 서비스 - 부모상담의 유형은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 가능 ㉓ 기본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 함 < 예시 > 개별 (1:1) : 프로그램 40 분, 부모상담 10 분 집단 (1:2) : 프로그램 50 분, 부모상담 20 분 집단 (1:3) : 프로그램 60 분, 부모상담 30 분	
	㉔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㉔ 부모훈련 :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서비스	선택적 제공



### 5. 제공인력 기준 <①, ②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주의! 변경사항**

구 분	내 용
① 국가 자격증	“장애인복지법” 제72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② 학위 자격증	심리학, 상담학, 해당분야 치료상담학 (언어, 미술, 음악, 놀이, 인지, 행동, 재활 등), 특수교육학, 교육학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이상)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㉓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㉔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 **▶ 2024년 신규 제공인력은 국가자격과 학위전공자만 신규등록 가능(민간자격 미인정)**  
 ※ “군” 단위 지역은 민간자격증만을 소지한 자도 신규 등록 가능. 단, 1년 내 필수전공과목 6개 영역 필수 이수해야만 차년도에도 사업참여 가능

★ **▶ 2023년까지 등록된 제공인력 중**  
 - “민간자격증”만 소지한 기존 제공인력은 유예기간 (2024.01.01.~2024.12.31.) 내 아래의 필수전공과목 이수를 통해 추가 자격인정 필수(조건부 참여)  
 - 2025년부터 추가 자격인정 미충족시 사업참여 불가

2024년 신규 제공인력		민간자격 인정 X (진입불가능)
2023년 까지 등록된 기존 제공인력	필수전공 6개 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지속참여가능)
	필수전공 6개 과목 미이수자	“1년” 유예기간 부여 후 재심사 (조건부 참여)

※ 필수전공과목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해진 과목)  
 : 상담관련분야 교과목 중 ①상담이론과 실제, ②면접원리, ③심리측정 평가, ④발달이론, ⑤이상심리, ⑥각 제공인력 관련 치료분야 이론 또는 실제 등 6개 영역의 각 영역내 1과목 이상 수강 필수 (교과목 이수증빙자료 제출)

※ (2024년부터 신규 제공인력 등록시) 시군에 제공인력 보고 /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사전 자격 심의 필수

### <각 서비스별 인정 자격범위> 해당 분야의 서비스는 해당분야 자격 소지자만 인정

구 분	인정자격
언어치료	- 언어재활사
놀이, 미술, 음악치료	- 국가자격 - 해당 치료분야의 학위자격 + 실무경력
인지치료	- 국가자격 - ②에서 제시한 학위자격 + 인지관련 2과목 이상 이수 + 실무경력 ex) 인지 ( 학습 ) 치료, 학습장애치료, 장애특수교육 중 2과목



6. 서비스 가격

★ 주요변경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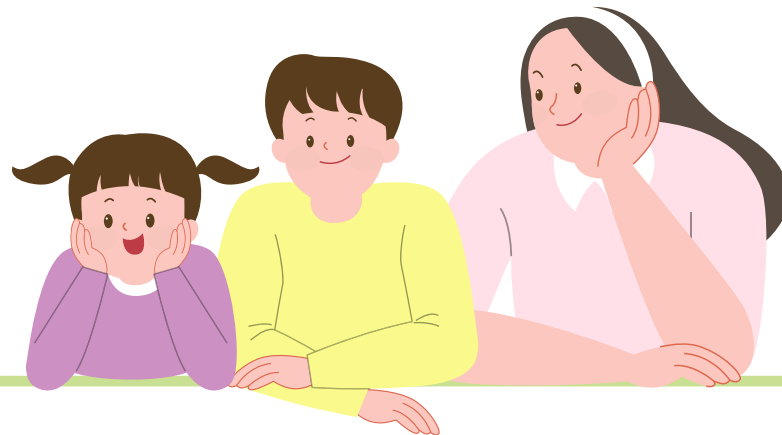
월 18만원~25만원 (가격탄력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구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62,000원 (90%)	18,000~88,000원
2등급(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144,000원 (80%)	36,000~106,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126,000원 (70%)	54,000~124,000원
4등급(기준중위소득 140%초과~160%이하)	90,000원 (50%)	90,000~160,000원
5등급(기준중위소득 160%초과)	36,000원 (20%)	144,000~214,000원

※ 단, 자격유예에 해당되는 제공인력은 최저기준적용

※ 본인부담금은 상한선 내로 학위, 근속연수, 기타경력 등의 기준에 의해 제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적용

※ 단, 제공기관별 연간 서비스 단가표는 매년 연초(1~2월 내) 시군에 보고 필수. 신규 제공기관은 기관 등록 시 제출 (단가표는 경기도 서식 [공통서식 14호] 활용)



7. 서비스 제공 절차

1단계 :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사전심리검사 의무 실시)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요구 조사 (사후심리검사 의무 실시)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사전·사후 검사의 심리평가도구(안)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심리평가도구를 2개 이상 활용 (단,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와 치료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
- 만 3세 이하의 유아인 경우는 객관적 평가도구의 활용은 제외할 수 있음.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평가
- 서비스 대상의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 시 재검사 없이 그대로 활용 가능
- 제공기관은 심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관리

※ 제공기관은 K-CBCL 검사도구를 공통으로 사용해야하며, 필요 시 그 외 검사도구 사용 가능.

구분	서비스 영역	인정자격
기본 서비스	언어프로그램	PRES, REVT, SELSI, U-TAP(APAC), P-FA, LSSC, KOLRAI, 관찰평가
	놀이·미술·음악 프로그램	놀이평가, 덴버검사, HTP, K-HTP, KFD, SCT, KSD, K-YSR, MT-MAP, IMTAP, MMPI.
	인지프로그램	KNISE-BAAT, BASA, 관찰평가
	공통 (서비스 대상 욕구판단)	K-CBCL, K-ARS, RCMAS, K-PRC, K-CYP

# 운영 및 이용 Q & A

## [제공인력 자격관리제도]

**Q** 유예 제공인력(민간자격증만 소지)의 추가 자격 인정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A** 2024년 1년의 유예기간 (2024.01.01.~12.31.)내에 아래의 자격을 충족한 후, 추가 자격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심의를 진행합니다. 1) 국가나 학위자격 취득 2) 아래의 필수전공과목 각 6개 영역 내 1과목 이상 이수

※ 필수전공과목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해진 과목) : 상담관련분야 교과목 중 ① 상담이론과 실제, ② 면접원리, ③ 심리측정 평가, ④ 발달이론, ⑤ 이상심리, ⑥ 각 제공 인력 관련 치료분야 이론 또는 실제 등 6개 영역의 각 영역내 1과목 이상 수강 필수(교과목 이수 증빙자료 제출)

※ 상담관련분야 동일(유사)교과목은 「2024년 경기도 표준매뉴얼」 p.166 참고

**Q** 필수전공과목은 어떻게 이수해야하나요? 이미 수강한 과목이 있는데 모두 다시 들어야하나요?

**A** 필수전공과목은 학위 자격과 관계 없이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학점인정 기관의 교육과정을 통해 과목 이수를 하면 인정됩니다. 또한, 이전에 들었던 교과목이 있다면 이수증빙(성적증명서 등 학점 증빙 서류)을 통해 인정가능합니다.

**Q** 현재 활동 중인 제공인력인데, 자격 재검토에서 '부적합'을 받았습니. 24년부터 바로 중단해야하나요?

**A** 원칙적으로 '부적합' 제공인력은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고자 기존 서비스 계약까지는 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규 서비스 계약, 가격탄력제 적용불가)

**Q** 신규 제공인력 등록시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규 제공인력을 승인합니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지원단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자격서류 제출 → (지원단) 적합성 검토 → (제공인력) 적합성 결과 (승인/유예/부적합) 확인 및 확인서 출력 → (제공기관) 시군에 제공인력 보고 (자격 확인서 첨부) → (시군) 제공인력 최종 승인

※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Q** 심의 받은 제공기관 외에 다른 제공기관으로 입사하려고 하는 제공인력입니다. 이 경우에 새로운 제공기관에서 다시 자격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 다시 자격심의를 받을 필요없이 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자격확인서"를 시군에 제출 하면 됩니다. (단, 지원단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소속기관 및 자격정보에서 별도의 제공기관 "신규등록"은 필요)

**Q** '놀이' 자격만 승인 받아 활동 중인데, 미술, 음악 등 다른 서비스도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다른 세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자격을 추가로 심의받아야 합니다. 추가 심의 방법은 기존 자격심 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구분	제출 서류
언어치료	- 언어재활사
놀이, 미술, 음악치료	- ①에서 제시된 국가자격 - ②에서 제시된 학위 전공 중 해당 치료분야의 학위자격 + 실무경력
인지치료	- 국가자격 - ②에서 제시한 학위자격 + 인지관련 2과목 이상 이수 + 실무경력 ex) 인지(학습)치료, 학습장애치료, 장애특수교육 중 2과목



## [가격탄력제]

**Q** 서비스 단가 결정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별도로 시군에 보고할 필요는 없나요?

**A** 아닙니다. 본인부담금 자율화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반드시 아래의 2가지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①국가자격과 학위전공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유예자격자는 최저 서비스 단가 적용) ②서비스 단가표를 작성하여 매년 연초 (1~2월내) 해당 시군에 필수적으로 보고하여야합니다. [공통서식 14 참고]

**Q** 본인부담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이용자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선(회기당 62,500원)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A** 아닙니다. 62,500원은 가격 상한선으로서 이용자의 의사와 가격부담을 고려하여 합의하에 45,000원 ~ 62,500원 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이용자 등급에 따라 서비스 가격에 차등을 둘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동일기관에서도 이용자의 상황이나 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단가에 차등이 가능합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A** 제공기관에서는 아래의 서비스 가격표를 참고하여, 상한선 내에서 제공인력의 기타경력, 학위, 근속연수 등 기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서비스 단가표"를 작성합니다. ※ 제공기관은 매년연초(1~2월내) 해당 시군에 "서비스 단가표" 보고 필수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단가표 작성 예시 >  
- 월 18~25만원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사이에서 서비스 1회당 단가 산정

연번	제공 인력명	서비스 구분					비고
		놀이 1회당 서비스단가 (원)	언어 1회당 서비스단가 (원)	인지 1회당 서비스단가 (원)	미술 1회당 서비스단가 (원)	음악 1회당 서비스단가 (원)	
1	홍길동	45,000 원	-	-	45,000 원	-	유예자격
2	김대한	-	60,000 원	55,000 원	-	-	승인자격
3	강민국	-	62,500 원	-	-	45,000 원	일부만 유예자격

**Q** 상한선 내라면 서비스 이용 중간에 본인부담금 변경도 가능한가요?

**A** 가격탄력제가 시행되더라도 최초 서비스 계약서상 본인부담액과 다르게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공인력 퇴사, 변경 등 부득이하게 본인부담금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이용자와 합의하에 변경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Q** 기존 이용자도 가격탄력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 기존 이용자(23년까지 선정된)는 적용 불가합니다. 가격탄력제는 2024년 신규 선정되거나 2024년 재판정 대상으로 선정된 이용자 대상입니다.